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1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며,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관련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의2 제1항제11호, 안 제16호 신설)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안 제19조의2, 현행 별지 제9호서식 삭제, 안 별도 1 신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1조의4제1항, 제2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우리 구 조례의 지원 근거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감면 혜택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 내용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관련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의2 제1항제11호, 안 제16호 신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주민에게 할인 적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안 제19조의2, 현행 별지 제9호서식 삭제, 안 별도 1 신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1조의4제1항, 제2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우리구 조례의 지원 근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추가 신설하고 여성우선에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주민의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